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24

서 울 고 등 법 원

제 8 -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누3134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특별시 ◯◯구청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3. 12. 22. 선고 2023구단3155 판결
변 론 종 결	2024. 7. 19.
판 결 선 고	2024. 8.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24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아래 제2항에서 추가 판단을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행, 제5행의 각 "○○ C" 부분을 "○○ ○○구 C"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3~4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바. 원고는 2022. 11. 1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로부터 90일 이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자 2023. 2.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이후인 2023. 6. 7.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지방세법 제18조에 따르면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과세관청의 별도의 부과 처분은 부존재하며,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기한 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자진납부신고서나 자납용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그 고지서에 부과근거, 구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24

제방법 등이 명시되어있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취득세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8조 제3항 본문은 "제89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98조 제4항은 "제3항 본문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2항에 따른 결정기간(이하 이 조에서 '결정기간'이라 한다)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65조 제2항은 "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24

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를 규정하고 있다.

2) 관련 법리

가) 국세기본법 또는 개별 세법에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조리에 의한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납부의무자의 세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18284 판결 등 참조).

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될 수 없으므로, 국민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할지라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24

도 이로써 신청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면 행정청이 한 거부의 의사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7. 5. 9. 선고 96누5933 판결 등 참조).

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3881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3) 구체적 판단

가) 원고는 2022. 10. 18. 이 사건 쟁점주택의 취득(잔금지급기일 2022. 9. 30.[1])이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의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 12%'를 적용하여 취득세 8,400,000원, 지방교육세 280,00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22. 10. 31. 피고에게 이 사건 쟁점주택의 취득이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표준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지방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11. 4.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

1) 매수인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7두56032 판결의 각 취지 등 참조).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24

서 본 바와 같다.

나)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적법한 조세심판절차를 거쳐 경정청구기간 내에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라 피고에게 한 위와 같은 지방세 경정청구에 대해 피고가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여, 이를 심판대상으로 삼은 것인바, 그러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과세관청인 피고의 행위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2],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

판사 신○○

판사 정○○

2) ① 대법원은 일관되게 지방세법령상의 경정청구에 대한 과세관청의 거부처분에 대해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두10639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65602 판결,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두58059 판결 등 참조).
②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9두50946 판결 등 참조).